###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-107호

# 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추가 기업 모집 공고

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·중소·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,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'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·중소·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,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8월 9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

# 1. 지원 개요 □ 지원내용 :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·중소·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□ 모집대상 : 창업·중소·중견 제조기업 □ 지원분야 : 디자인 전 분야 □ 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~2023. 12. 31. □ 지원규모 : 90개사 내외 □ 지원금액 :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윌 1,605천원~3,040천원의 인건비 보조

## 2. 추가 기업 모집

### □ 지원내용

o 지원분야 : 디자인 전 분야

o 지원대상 : 창업·중소·중견 기업 등 50개사 내외<sup>1)</sup>

<디자인인력지원사업> 제조기업 신청자격

- '**창업기업**'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(접수 마감일 기준)
- '중소기업'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
- '중견기업'이라 함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기업
- '디자인전문회사'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, 신청 가능
- o 지원인력 :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<sup>2)</sup>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
-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
- 최초 사업공고일(2023. 3. 23.) 이후 신규 채용(4대 보험 가입 기준)한 디자인 인력 지원
- '22년에 동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(전년도 경력 기준) 지원 디자이너의 경우 **2개년 연속 지원 가능** (단, '23년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하며, 변경된 '23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
- o 지원기가 : 협약 체결일<sup>3)</sup>~2023. 12. 31.
- o 지원금액 :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

### <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, 월 기준>4)

구분 총괄		특급	고급	중급	초급	보조
실무경력 요건* 20년 이상		16년 이상 12년 이상 20년 미만 16년 미만		8년 이상 12년 미만	4년 이상 8년 미만	~4년 미만
<b>임금총계</b> (A = B + C)	6,080,000원 이상	5,380,000원 이상	4,950,000원 이상	4,390,000원 이상	3,790,000원 이상	3,210,000원 이상
정부지원금(B)	3,040,000원	2,690,000원	2,475,000원	2,195,000원	1,895,000원	1,605,000원
기업부담금(C)	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					

\*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

<sup>1)</sup>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, 예산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또는 달라질 수 있음

<sup>2) [</sup>붙임] '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'의 <표2.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> 참고

<sup>3)</sup> **협약 체결일은 2023년 11월 30일까지**로, 12월 1일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<sup>4) 2022</sup>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<표1.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> 준용

- ※ 세부 직급,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-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
- ※ 위 단가는 '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'(국가통계, 제448001호)를 준용한 것으로 정부지원금(B)과 기업부담금(C)를 합산한 임금총계(A)가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
- ※ 임금총계(A)는 직원이 수령하는 기본급여, 제수당, 월상여금, 월퇴직급여충당금, 월사회보험료(회사부담금)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, 지원 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
- ※ 임금총계(A)는 '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'×22일(월 평균 근무일 수) 준용
- ※ 본 사업에서는 임금총계(A)의 50%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(B)을 지원함

### 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공고일~2023. 8. 25.(금) 17시까지 온라인 접수
  - ※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
- o **접수처** :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(https://job.kidp.or.kr)
- 제출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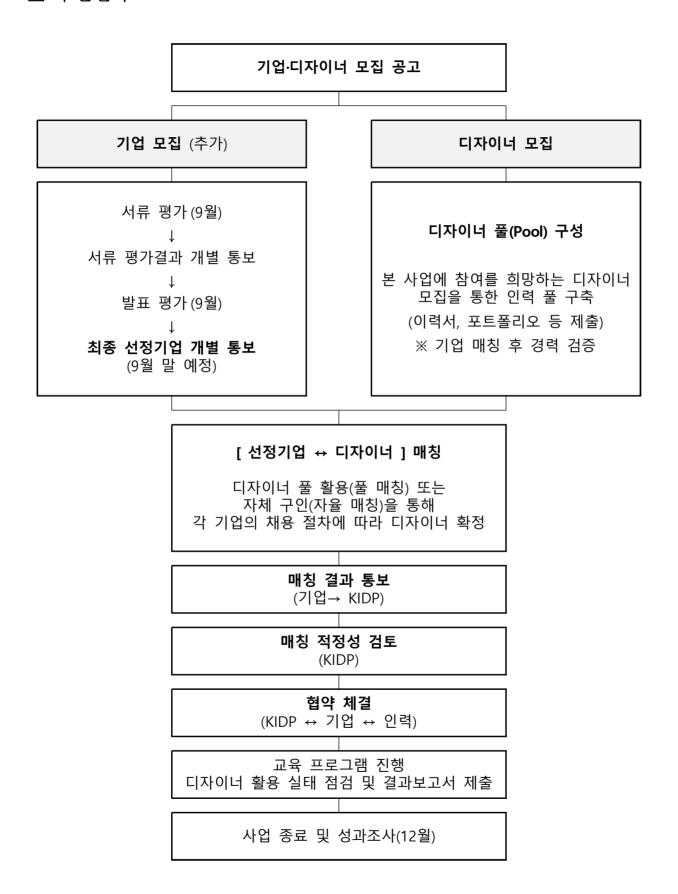
항 목		шыло	구 분	
	8 =	세부내용	신규 참여	연속 참여*
1	디자이너 활용 계획서	■[서식 1] 활용 ✓ 파일명: "1_디자이너활용계획서_기업명"	0	-
2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■[서식 2] 활용 ✓ 파일명: "2_신용상태조회동의서_기업명"	0	0
3	청렴 서약서	■[서식 3] 활용 ✓ 파일명: "3_청렴서약서_기업명"	0	0
4	재무제표증명원	■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(2020-2022년)  - '22년 미결산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(가결산 자료 없을 시 20년, 21년 자료만 제출)  - 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제출  -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경우, 창업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 ✓ 파일명: "4_재무제표증명원_기업명"	0	0
5	<b>기타 증빙</b> (해당 시 제출)	■ 가점 부여 관련 선정·인증서 (※ 5p '가점 및 우대사항 안내' 참고) ■ 우대사항 인증서: 여성기업 확인서 등 ■ 기타 기업 수상 및 인증서 (심사 시 참고) ✔ 파일명: "5_인증및수상내역_기업명"	○ (해당 시)	○ (해당 시)
6	<b>고용 유지 증빙</b> (해당 시 제출)	■ 채용중인 연속 지원 대상 전년도 참여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스캔본 (※ 공고일 이후 출력된 자료)	-	0

<sup>\*</sup> 전년도(2022년) 참여 기업이 중급 이상 지원 디자이너 고용 유지 및 같은 인력 지원을 신청한 기업

<sup>※</sup> 작성 자료는 웹사이트(https://job.kidp.or.kr)의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3년 신청 서식을 활용할 것

<sup>※</sup> 제출 자료 누락 및 식별 불가(본인 확인 불가 등) 시, 불인정 또는 심사에서 제외

# 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□ 선정평가

구 분	단 계	평가기준		세부 평가내용		
	1차 서류평가	적합성	30	- 디자인기업 생산 품목과 지원 분야의 적합성 - 디자인 개발 계획의 적정성 - 디자인 혁신 가능성 등		
		경영·재무 역량	20	-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영업이익률, 매출액 증가율 경영·재무 현황 등		
		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	50	-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·시급성 -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 -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		
		우대항목	가점	- 우대사항*의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		
신규 참여기업	2차 발표평가	기업 현황	30	- 기업의 경영 목표 -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-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-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		
		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	50	-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·시급성 -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 -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		
		지속 고용 가능 여부	20	- 디자이너 확보 계획의 적정성·적극성 - 디자이너 정착화 방안 및 제공 혜택 -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		
		(2인 지원 대상)	적/부	-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·시급성·활용 구체성 - 2인 지원 디자이너의 정규 채용 고용 가능성 등		
연속 참여기업* (중급 이상 같은 지원 디자이너를 연속 지원 신청한 기업	1차 서류평가	면제				
	2차 발표평가	기업 현황	10	- 기업의 경영 목표 - 디자인을 경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 환경 - 자체적인 보유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- 최근 매출 실적 및 매출확대 노력의 적극성 등		
		지원 디자이너 활용 성과	50	- 전년도 지원 디자이너 활용 결과물 및 성과		
		지원 디자이너 활용 계획 및 지속 고용 가능성	40	- 디자이너 지원의 필요성·시급성 - 디자이너 지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 - 디자이너 지원 활용성과 창출 가능성 등 - 지원 종료 후 지속 고용 가능성 등		

\* 전년도 참여 기업이 중급 이상 지원 디자이너 고용 유지 및 같은 인력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, 서류평가 면제

### ※ 가점 및 우대사항 안내

- 1) 다음의 선정 기업이 신청할 경우, 1차 서류평가 시 총점에 5점 가점 부여
  - '21~'23년 디자인혁신 유망기업, '2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
  - 생활소비재기업 : 우수디자인(GD)상품, '21~'23년 글로벌생활명품
  - 수출유망기업: WC 300,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,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, 중견기업 글로벌지원사업
- 2) 동점자 발생 시, 우선 선발
  - 여성기업(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)
- 3) 기타
  - 가점 최대 합은 5점을 넘을 수 없음(동일사항에 대한 중복 건은 1건으로 인정)
  - 우대 가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
  - 관련 인증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(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)
  - 기타 디자인 관련 수상 및 우대사항 외 인증 사항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

# 3. 유의사항

### □ 선정 제외 기업

- 최근 2년 연속('21~'22년)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
- ㅇ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o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o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%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
- ㅇ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- ㅇ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
- ㅇ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
- ㅇ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

### □ 기타 사항

-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, 별도 구성된 디자이너 풀 이용 또는 자체 모집한 디자이너를 자율 매칭으로 최종 지원 기업・디자이너 확정 (단, 기업에 최초 사업공고일(2023. 3. 23.) 이전 채용 인력과는 연계 불가)
-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-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매칭된 지원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 시, 지원 잔여기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 (단, 잔여기간 동안고용 유지 및 증빙 필수)
- 제출자료는 필요시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게 기밀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원 디자이너가 지원 대상 기업 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
   (지식재산권 등)은 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
   (단, 연구개발성과물 등에 창작 디자이너 실명 명기 권고)

- 지원 대상 기업은 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경영자 및 지원 디자이너의디자인 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(별도의 교육 운영 예정)
- 사업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 미제출,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등 지원 사업 의무사항 불이행 및 악용 기업에는 참여 제한과 지원금 환수

□ 문의처 :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담당자

ㅇ 담당부서 :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

ㅇ 전화 : 031-780-2128

ㅇ 웹사이트 : www.kidp.or.kr

o 전자우편: job@kidp.or.kr

ㅇ 주소 : (13496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(야탑동 344-1),

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,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